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 - 79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 7. 1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58호(2006. 8. 24.)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30호(2015. 2. 12.)로 최종 변경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 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52호(2015. 3. 19.)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5)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701-513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명 칭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1)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문조합관리인:김진규)

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5, 2동 3층 302호(전화:02-701-5133)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개월(변경)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07. 9. 3.(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자.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

1) 변경인가 사항

가) 다. 조합대표자 조합장 김종태에서 전문조합관리인 김진규로 변경

나) 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
개월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개월로 변경

2)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조합대표자 변경 및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